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강남가정요양원

1. 계약 목적 및 계약대상자

- 1)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계약대상자 -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 3)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입소자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 4)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시설에 입소하는 기간동안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입소 대상 및 계약 대상자

요양 시설 입소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 1~4등급 시설급여를 받은 자
- 2)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
- 3) 기초수급자나 긴급조치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을 들 사람이 없는 노인
- 4) 위 1, 2, 3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요양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노인

3.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의 연장

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1) **계약 기간**은 서비스 개시 시점부터 장기요양급여 유효기간까지로 하며, 급여제공 계약서 상에 명시한 입소기간이 만료시 별도의 의사가 없는 경우 수급자와 시설 사정에 따라 **계약기간을 장기요양 인정기간 및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하도록 한다.

4. 계약서

계약서(급여제공계약)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도록 한다.

5. 계약서 부분 발부

계약은 시설장과 이용자 및 보호자가 함께 계약 사항을 확인하고 동의 한 후에 체결하며, 계약서는 각각 1부씩 보관한다.

6.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 1)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중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급여비용 인상 또는 인하된 경우 변경된 비용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한다.
- 2) 식재료비 및 물가 인상 등 대내외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인상 및 인하가 필요할 경우, 내부적인 절차를 따라 변경한 후 변경된 비용에 대한 안내를 하고 가정통신문과 다른 방법을 통해 충분히 공지한 다음에 시행한다.
-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 ①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 ②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 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4) 이용료 납부방법
 - ① 당월 청구되는 이용료는 당월 안에 정산내용을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고지 하며 매월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이용료 납부는 기관의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7.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시설은 입소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생활보호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 여가 전용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본인부담금, 비급여)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시설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 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단, 상비약의 사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급식 서비스	입소 어르신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해 충분한 영양섭취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건강의 유지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상담 서비스	입소 어르신과 그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및 건강에 관련된 제반문제들을 상담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도움을 준다.
의료 서비스	입소 어르신에게 각종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상태 체크 및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재활의욕을 고취시킨다.
신체재활 서비스	기능회복훈련, 장애에 따른 부위별 치료를 통해 통증완화 및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각종 치료 기법을 통한 개인의 잔존 능력향상을 통한 자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심리사회 재활 서비스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결여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사회성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여가활동 서비스	다양한 여가활용을 권장해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
후생 서비스	입소 어르신들의 청결 유지와 사회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복지후생 서비스이다.

8.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

-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①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②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의 목적으로 입소자 상태가 긴급할 경우
-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칭한다.
- 4) 합숙용(2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 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침실을 옮길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 5) 집중 관찰 및 전문 활동에 관한 특별 서비스 기준
 -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 서비스(산소 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③ 특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단, 시설 운영상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실 이용에 관한 추가 비급여 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 ④ 감염성 질환 등 감염으로 인한 격리치료가 필요한 경우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⑤ 기타 개별적인 집중 케어를 위한 특별 의료 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9.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 1) 표준 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 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 3) 표준 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 4)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5)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6)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7)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8)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1)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0.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 상태 등의 자료 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 의무

6)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 회복 의무

11.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시설의 입소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세부내용은 **[별지 1]**을 참조 한다.

1) 이용자(등급외자 포함)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대표자가 정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3)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하며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비급여 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4)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내부에 게시 하여
안내한다.

12. 입소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3) 보호자 인적 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4)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5) 기타 시설 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13. 입소자의 책임

시설 입소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책임 의무를 가진다.

1) 기관과 기관 종사자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입소 계약서(급여제공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의 변경사항은 반드시 즉각적으로

시설에 통보한다.

- 3) 입소 후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입소자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 5) 혐오 물품, 동물, 기타 급여제공에 방해가 되는 물건 및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은 시설에서 소지할 수 없다.

14. 계약의 해제

입소자가 입소 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의 계약 해제

- ①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써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②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 ③ 입소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시설은 입소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통지를 받은 날부터 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2) 입소자의 계약 해제

입소자와 보호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해당 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별지1]

<2025년 노인요양시설 1일당 장기요양 수가>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일 입소수가	72,480원	67,250원	62,000원	62,000원
1일 이용료	14,496원	13,450원	12,400원	12,400원
비급여항목	금액			
식재료비	1일 3식 × 31일 = 353,400원 (식사 1회 당 3,800원)			
간식비	1일 1회 1,400원 × 31일 = 43,400원			

<본인부담금 비율 >

구분	시설급여
일반	20%
기초수급권자	0%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본인부담금 100분에 60) (본인부담금 100분에 40)	감경 8%, 12%

<연봉 외 수당 지급기준표>

구분	금액
직책보조비	시설장 600,000원/ 월
장기근속장려금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60,000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 80,000
	84개월 이상 : 100,000